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110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개정된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관계법령과 부합

2. 주요내용

가.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문 정비(안 제11조, 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)

나.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(안 제13조, 용도 외 사용금지 등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
 -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)
 -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2. 10. 6. ~ 2022. 10. 26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(2022. 11. 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의 제1항 “(지원을 할 수 있다)”를 “(지원을 하여야 한다)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의 제1항 “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20조)를 ”

“(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</p> <p>제11조 (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)</p> <p>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(이하 “체육회 등”이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<u>할 수 있다</u></p> <p>제13조(용도 외 사용금지 등)</p> <p>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「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</u>」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</p> <p>제11조 (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)</p> <p>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(이하 “체육회 등”이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<u>하여야 한다</u></p> <p>제13조(용도 외 사용금지 등)</p> <p>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「<u>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11조 (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)
 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
4. 작성자 : 관광경제국 체육진흥과 고장훈 (☎3153-9862)